

구 分		현 行	조 정 安	인 상 률	비 고
고급좌석	일 반 인	1,300원/1,200원	1,400원/1,300원	7.7%/8.3%	카드할인액 종전유지
	중·고생 (현금/카드)	1,300원/980원	1,400원/1,100원	7.7%/12.2%	일반인 대비 0%/15% 할인
	초등학생	1,000원/980원	1,000원/1,000원	- /2.0%	일반인 대비 29%/23% 할인

지 하 철

- 운임수준분석
 - 승객1인당 영업수익 650원
 - 승객1인당 수송원가 1,148원
 - ※ 운임수준 : 수송원가의 56.6% (운임현실화율)
- 인상필요액 : 529원 (보전운임수준 1,129원 - 기본운임 600원)
 - ※ 보전운임수준 1,129원

$$= [\text{수송원가} - (\text{평균수익} - \text{평균운임})] \times (\text{기본운임} \div \text{평균운임})$$

$$= [1,148원 - (650원 - 565원)] \times (600원 \div 565원)$$
- 운임범위 조정(안)
 - 기본운임 : 600원 → 700원 이하(16.7% 인상)
 - 2구간운임 : 700원 → 800원 이하(14.3% 인상)
 - 이동구간제 : 5km마다 80원 → 현행유지

구 分	현 行	조 정
구 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간 : 600원 - 2구간 :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구간 : 700원 이하 - 2구간 : 800원 이하
이동구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km까지 : 기본운임 - 초과 5km마다 80원 가산 	- 현행유지

※ 할인율 및 할인액 현행유지

- 교통카드 할인율 : 중고생 20%, 일반 8%
- 교통카드 환승할인액 : 50원
- 초등학생 할인율 : 5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03. 2.
도시 관리 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의결(처리건수) : 8건(원안동의 7건, 조건부동의 1건)

○ 안건별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정내역	심사결과
16	2002. 7.19	2002. 7.24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 관리위원회(2003. 2.20)	원안동의
76	2002.11. 4	2002.11. 6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 관리위원회(2003. 2.20)	원안동의
132	2003. 1.29	2003. 1.30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 관리위원회(2003. 2.20)	원안동의
133	2003. 1.29	2003. 1.30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 관리위원회(2003. 2.20)	원안동의
134	2003. 1.29	2003. 1.30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 관리위원회(2003. 2.20)	원안동의
136	2003. 1.29	2003. 1.30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 관리위원회(2003. 2.20)	원안동의 (조건부)
137	2003. 1.29	2003. 1.30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 관리위원회(2003. 2.20)	원안동의
138	2003. 2. 3	2003. 2. 4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 관리위원회(2003. 2.20)	원안동의

2. 상정일자

- 제139회 임시회 제5차 도시 관리위원회(2003. 2.20) 상정, 의결

3. 제안이유 및 요지

가. 제안이유 : 별첨내용

나. 주요요지 : 안건별 내용 별첨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 안건별내용

5. 심사결과

- 서울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전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 절차로서, 도시계획 결정과 변경결정을 실제로 영향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 이익에 관계되는 결정(변경)안 7건에 대하여 시장 결정안 대로 원안동의 하였으며
- 지역형편이나 도시계획결정 내용으로 보아 시장결정안에 특별히 의견 있는 1건에 대하여 조건을 달아 원안동의 하였음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번호	16	제출일자 2002. 7.19
------	----	-----------------

1. 안 건 명 : 강남구 역삼동 722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시장)폐지와 함께 일반주거지역 종의 세분화를 병행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구분	위 치	면적(m^2)	용도지역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강남구 역삼동 722번지 일대	4,946.2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이견없음
6. 검토의견(전문위원)
 - o 본 안건은 강남구 역삼동 722번지 일대 $4,946.2m^2$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안으로
 - o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시장)종합관리방안에 따라 시장기능이 상실된 시장은 다른 종류 또는 업태의 시장으로 변경가능 여부와 다른 공공용지로의 활용여부 검토를 선행한 후 시설 폐지 검토하고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종(1종, 2종, 3종)의 세분화를 병행 결정도록 되어 있는바
 - o 동 부지는 1996.5.14 지구단위계획(구 도시설계)으로 결정되어 특별한 건축제한이 없는 부지로서, 1999.9.20 시장(가자종합상가) 폐업신고된 후 1999.10.14 “시장재건축조합아파트신축 공사”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고 2002.5.1 사용검사 처리되어 공동주택 1동(지하3층, 지상17층)이 건립된 상태임
 - o 주변지역 북측의 일반상업지역은 3~20층 규모의 중대형 건물이 입지하고 있고 남측의 일반주거지역에는 2~4층 규모의 중소형 건물로 형성되어 있는바 시장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이하, 층고제한 없음)으로 변경하는 것은 여타 시장기능 폐쇄지역과의 형평성,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토지이용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현황여건을 고려하고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 등을 고려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 o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76
------------	----

제출일자 2002.11. 4

1. 안 건 명 :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2. 제안이유 :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일대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를 시장(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현 건축물에 대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요지
 - o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장)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m^2)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유통업무설비	-	송파구 가락동 600일대	538,351	감)538,351	0	
신설	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송파구 가락동 600일대	0	증)531,830	531,830	

○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비고
55% 이하	70% 이하	해발 37m (5층) 이하	

4. 주민의견 청취 결과 : 의견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설된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시장)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시장종합관리방안」에서의 재정비 기준에 부합되어 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일대 $538,351m^2$ 의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를 $531,830m^2$ 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시설변경하고 현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안으로
- 동 시설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시장으로써 '97. 12. 30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되어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도매시장임.
-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배경은
 - '98. 12. 30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따라 도매시장, 창고, 화물적하시설 등이 있으면 '유통업무설비'로 지정하여 설치 가능하였으나
 - '97. 5. 21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제정되고 2000. 8. 18 전문개정 되면서 '유통업무설비'는 ①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자동차경매장 ②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철도역, 화물보관시설 ③창고, 화물적하시설, 축산물 보관장 등의 시설 중 각 항목별로 1개 이상이 함께 설치 운영되도록 되어 있고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항만·공항·유통업무설비·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 바, 현 시점에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수립은 현행기준에 맞지 않아 불가한 상태임
- 가락시장 내에는 경매를 위한 비가림시설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161개소 $47,713m^2$ 가 설치되어 있는데 건축법령의 저축을 사유로 송파구청에서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비를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통업무설비 상태에서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가하나 시장으로 변경되어 건축조례만 개정되면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추진되었음
- 따라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현행규정으로 비추어 볼 때 '유통업무설비'보다는 '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

의안 번호	132
----------	-----

제출일자 2003. 1.29

1.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 결정

2. 제안이유 : 광진구 군자동 111-1 외 2필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주요요지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학교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일대	109,728.2	증) 8,692	118,420.2	'76. 6.23	세종 대학교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이견없음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광진구 군자동 111-1 외 2필지 8,692m²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편입 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 동 부지는 세종대학교 소유로 건물3동이 있으며 현재 예체능계 강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세종대학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한 교지 확보율이 기준면적의 50%이하 수준으로서 현저히 부족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

의안 번호	133
----------	-----

제출일자 2003. 1.29

1. 안건명 : 용산구 보광동 80-21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2. 제안이유 : 차고지 기능이 상실된 (자동차정류장)의 폐지와 함께 일반주거지역 종의 세분화를 병행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주요요지

구분	위치	면적 (m ²)	용도지역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용산구 보광동 80-21호	1,850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없음

96 (第139回-第2次)

5.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의견 : 의견 없음
6. 서울시 의견(대중교통과) :
 - 차고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적의 처리
7.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용산구 보광동 80-21호 1,850m²를 1978. 5월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어 버스차고지로 사용하여오다 2001. 4. 3 차고지가 이전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로 변경 입안된 사안으로
 - 동 부지는 용산구청 소유로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1동이 전립되어 있는데 향후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및 생활체육·여가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구민체육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용산구의 토지이용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사료 되며 차고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자동차 정류장 폐지와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부합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의 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134
----------	-----

제출일자 2002. 1.29

1. 안건명 : 금천구 시흥동 270-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도시계획도로(10m) 개설로 차고지 기능이 상실된 자동차 정류장의 폐지와 함께 일반주거지역 종의 세분화를 병행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주요요지

구분	위치	면적 (m ²)	용도지역		비고
			용도지역	비고	
변경	금천구 시흥동 270-9호	56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 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용도 폐지되는 토지형태가 자투리 형태로 불균형적인 건축물을 배치가 예상되어 도시계획 시설(공공공지) 등 녹화된 개방공간으로 활용 검토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금천구 시흥동 270-9호 56m²가 도로개설로 인하여 차고지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로 변경 입안된 사안으로
 - 동 부지는 1979. 6월 도시계획 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로 결정되어 버스차고지로 사용하여 오다, 1998. 1. 9 도시계획도로(폭 10m, 길이 210m)로 결정되어 3개 필지로 분할된 1개의 자투리 토지로서 1999. 11. 3 개인에게 매각되었음
 - 2001. 10. 26 토지소유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폐지요청 민원을 제기하여 2002. 1. 17 도시계획시설 폐지권고 하라는 고충민원사건처리결과 통보에 따라 금천구청에서 입안하였으며
 - 토지소유자는 동 부지를 포함한 연접 3필지를 합병하여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차고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자동차 정류장 폐지와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부합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의 변경결정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136
----------	-----

제출일자 2002. 1.29

1. 안건명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2. 제안이유 : 노원구 중계본동 29-47번지 일대 외 1개소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주요요지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계		185,690	
중계본동	노원구 중계본동 29-47번지 일대	158,512	
상계4동	노원구 상계4동 산161-12번지 일대	27,178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6,195,000	감 160,509	166,034,491	
중계본동	노원구 중계본동 29-47번지 일대	-	감 133,331	-	
상계4동	노원구 상계4동 산161-12번지 일대	-	감 27,178	-	

4. 주민의견청취결과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이견없음

6.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

<환경기획과>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하여 수목의 훼손이 없도록 하고
- 해제되는 구역 경계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생태계 훼손시 복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자연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

<도시개발공사>

- 노원구 중계본동 29-47번지 일대는 국민임대주택사업(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으로 집단취락지로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 및 저밀도로는 계획된 세대수(1,700세대)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책사업으로 해제 요청
- 개발제한구역 해제방법 변경

- 집단취락우선해제 → 국책사업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
 - 제1종 전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3종일반주거지역

7.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노원구 중계본동 29-47번지 일대 외 1개 지역 160,590m²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동 지역 185,690m²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1년 7월 30일부터 지정되었고 서울시의 지정면적은 166,195km²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역관리가 엄격하고 행위제한이 심해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련 추진경위는
 - 19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발표(건설교통부)
 - 1999년 9월 15일 개발제한구역조정 관련 지침 발표(건설교통부)
 - 1999년 12월 24일 우선해제 대상지역 발표(서울시)
 - 1999년 12월 29일 우선해제 원칙 및 해제경계선 발표(서울시)
 - 2000년 2월 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공람공고(서울시)
 - 2001년 9월 17일 광역도시계획 및 우선해제관련 지침 개정(건설교통부)
 - 2002년 3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 지침 개정(건설교통부)
 - 2002년 8월 14일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권한 위임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2002년 9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결정고시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취락 6개소)
 - 2002년 12월 12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재공람·공고
 - 2003년 1월 2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건설교통부)
 - 2003년 2월 3일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건설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2003. 1. 2) 및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며, 해제된 지역은 구역 밖의 동일 용도나 동일 용도지역보다 저밀도를 유지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 서울시의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경계선 설정과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에 의하면
 - 해제 경계선 설정의 기본방향은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주택이 있는 필지를 해제 대상으로 하고, GB해제로 인한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GB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경계선을 설정하고 기존 공원·녹지 등을 고려하여 과밀확산 방지 등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본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인구가 1,000명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 집단거주지역과 호수밀도 20호(1만m² 당)를 기준으로 1개 취락당 300호 이상 취락인 2개지역을 우선해제 대상으로 선정하여 금번에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 특성별로 분류하면
 - 노원구 중계본동 29-47번지 일대는 불암산도시자연공원 하단부에 위치하여 주변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북측은 기성시가지와 연접한 고지대에 위치하며 비교적 경사가 급한 편임.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인구 2,966명(976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930동임

- 노원구 상계4동 산161-13번지 일대는 '96.10.28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상계4-1)로 지정되어 '98.9.28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동측에 불암산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하여 주변 자연환경이 양호하며 서측은 기성시가지와 연접해 있으며, 주변 지형은 경사가 급하나 취락내부의 경사는 비교적 완만한 편임. 2개의 필지에 8~15평 가량의 소규모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인구 1,001명(345세대)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185동임.
- o 따라서 동 지역은 건설교통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취락지역에 해당되므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별첨 공람·공고시 제출된 주민의견과 같이 동 기준에 미달되는 취락의 주민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계속적인 민원제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책사업으로서의 해제방법변경 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 해소차원에서의 보상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봄.
- o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연접 지역인 불암산도시자연공원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층·저밀도, 환경친화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요구됨.

【 주민의견접수 및 검토의견 】

중계본동 29-47번지 (104번지 마을)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중계본동 104-12번지 일대 윤진목 외 1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967년 철거민들의 정착지로서 약946세대와 함께 정착한 지역이나 15채 주택만이 제외되어 이에 대하여 해제지역에 포함하여 주시고, o 토지에 대하여도 불하를 통해 이익배분과 보상을 바람. 	<p>일부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대상지역은 공원내 위치한 취락이므로 공원은 보존한다는 우리 시 해제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불가하나 o 동일한 취락형성경위를 가진 불량주단지인 점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추진시에 대상구역에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지역은 공원으로 회복
마포구 노고산동 31-158번지 성주이씨 대종회 이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공원으로 지정된 104번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요구 	<p>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대상지역은 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임야로서 해제대상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에 포함은 불가 함

- o 상계4동 산 161-12번지 일대 희망촌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노원구 상계4동 산 161-11호 박이순	○ 상계4동 산161-11호 필지의 일부만이 해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토지(공원)에 대하여도 해제 요구	미반영 ○ 대상토지는 공원내에 위치하여 당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제외된 토지로서 현재로서는 해제대상에 포함 할 수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동의(조건부)

- 국민임대주택 건립부지의 용도지역을 중·고밀도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검토 요망되며,
- 영구임대주택이 밀집된 자치구라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국민임대주택 건립비율 축소 및 평형의 다양화를 검토하고
-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137
----------	-----

제출일자 2002. 1.29

1.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와우근린공원) 변경 결정

2. 제안이유 : 마포구 창전동 3-183번지 일대를 연접된 와우근린공원에 편입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주요요지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	마포구 창전동 3-183번지 일대	60,214	증) 13,368.4	73,582.4	와우시민아파트 철거부지 편입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의견없음

6.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마포구 창전동 3-183번지 일대 13,368.4m²를 연접한 와우근린공원에 편입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 동 부지는 1970년에 봉괴된 와우시민아파트 철거부지를 인공 조립하여 사실상 녹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인데 인근 주민들에 의해 녹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으로
- 와우근린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18필지는 국·공유지로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체계적인 공원관리와 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공원변경 결정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138
----------	-----

제출일자 2002. 2. 3

1. 안건명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입체적 결정
2. 제안이유 : 종로구 승인동 83-2일대(지하철 1호선 동묘앞 정거장)를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3. 주요요지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1호선 동묘앞정거장)	종로구 승인동 83-2일대	7,275.4	증) 1,115.5	8,390.9	2001.12. 1	토지일부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구분	입체시설명	위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고
			폭 (m)	길이 (m)	높이 (m)	면적 (m ²)	
신설	도시철도 (지하철1호선 동묘앞정거장)	종로구 승인동 310번지 일부 (지하구간)	2.5~4.6	25.2	지하 0~25	81.8	높이는 현재 지반고기준임

4. 주민의견청취결과 : 의견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 철도시설 변경에는 동의함
 - 보도상 환기구 설치로 인한 보행공간 축소에 따른 불편초래 및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지상돌출시설물 외관상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 지하철건설본부 의견
 - 환기구 설치후 보도공간 2~3m 확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점자블럭설치, 환기구 외관의 화강암 돌붙임에서 투시형 환기구 변경 검토 대안제시
6. 관련부서 의견(종로구청)
 - 연결통로 설치 예정토지(58m²) 철도로 추가 결정 방안 검토
 - 지하철건설본부 의견
 - 연결통로 설치 예정토지는 궁안마을 재건축 사업 준공전에 기부채납예정 토지로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미해결 되어 철도 추가결정 곤란(추후검토)
7. 검토의견(전문위원)
 - 본 안건은 종로구 승인동 83-2일대 1,115.5m²를 도시계획시설(철도)로 편입 결정하고 종로구 승인동 310번지 일부 지하구간 81.8m²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 지하철 1호선 동묘앞 정거장은 2001. 12. 1 도시계획시설(철도)로 최초 결정되어 현재사업 시행(공정 10%)중에 있으나 사업시행과정에서 환승이용객의 혼잡완화 및 지하철 부대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한 정거장 부지의 추가확보가 필요하여 동 토지를 편입 결정하는 것으로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입체구역을 특정하는 방

102 (第139回-第2次)

식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 토지 소유자와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 동 토지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됨

8. 심사결과 : 원안동의

-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16
----------	----

제출년월일 : 2002. 7. 19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안건명 : 강남구 역삼동 722번지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2. 입안 내용

구분	위치	면적 (m ²)	용도지역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강남구 역삼동 722번지 일대	4,946.2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3. 입안 사유

- 시장기능이 상실 ['99.9.20 시장(가자종합상가) 폐업 신고] 된 시장의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와 함께 일반주거지역 종의 세분화를 병행 처리하고자 함

4. 기타

- 주민 의견 청취 현황
 - 공람공고 기간 : 2002. 2. 18 ~ 3. 4
 - 청취방법 : 2개 일간지(전국매일, 내외경제)
 - 접수 의견 : 없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이견없음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장
- 편입 토지, 건물 현황
 - 토지 : 사유지 : 1필지(4,845.02 m²), 구유지 : 2필지(102.2 m²)
 - 건물 : 30,232.87 m²(지상 17층/지하 3층)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76
----------	----

제출년월일 : 2002. 11. 4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안건명 :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2. 입안 내용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장) 변경결정 조서